

부산지방법원 2018. 8. 28 선고 2018가단382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8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2004. 8. 21. 접수 제311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신헌기

별지